

외부강의 · 회의 등의 신고 안내

제22조 (외부강의 · 회의 등의 신고)

① 임직원은 **대가를 받고** 외부강의 · 회의 등을 할 때에는 사장에게 **사전에** 신고하여야 한다.

※ 단, **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그 소속기관 포함)인 경우는 제외**

1. 신고 대상 : 세미나, 공청회, 토론회, 발표회, 심포지엄, 교육과정, 회의 등에서

강의, 강연, 발표, 토론, 심사, 평가, 자문, 의결 등

2. 신고 절차 : 외부강의 · 회의 등을 **하기 전에** 요청자, 요청 사유, 장소, 일시 및 대가를 기재하여 **사장에게 신고**

3. 대 가 : 요청자가 **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**을 초과할 수 없음

외부강의 대가기준(임직원행동강령 별표2)

(단위: 천원/ 1시간)

구 분	기관장·임원	부장급 이상	기타	비고
상한액	300	230	120	원고료·여비는 미포함
1시간 초과	200	120	100	

※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, 기준 초과 금지(상한액 개념)

사립대학교에서 요청한 외부강의 신고 누락 (사건 사례 Ⅱ)

● 모 교육청 A사무관은 甲사립대학교로부터 본인 직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1학기 동안 강의를 요청받아 총 350여만원의 대가를 받고 강의함.

●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복무규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았고, 공공성이 있는 학교에서 하는 강의라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해당 외부강의를 미신고함.

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은 외부강의이고, 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사립대학교인 경우

▶ 공공성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를 누락한 A사무관의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(외부강의 · 회의 등의 신고) 위반임